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3일,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9.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4. 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성원 의원)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 군인가족¹⁾은 군인의 잦은 격오지·접적부대 근무, 해외파병 등에

1)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따라 육아 등 가사를 혼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잦은 이사로 인해 자녀 교육에도 애로가 있으며 친지·지인과의 교류도 쉽지 않다는 점 등 국가안보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여야 하는 희생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개정안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군인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군인가족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매년 국군의 날 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 등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안보는 군인과 더불어 군인가족들이 감당하는 희생과 어려움이 바탕이 되고 있어 그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에서 인정과 격려,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다만, 법안 심사시에는 ① 현행 ‘국군의 날’이 국군장병의 사기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사기 고취의 방안에는 군인가족 예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념일에 군인가족을 격려할 수도 있는 점,

② 군인 외에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의 경우 가족을 예우하는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기념일이 지정된 선례가 없으며, 미국²⁾ 외에는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

③ 현재 각종 기념일이 이미 190여개에 이르는 상황³⁾을 고려할 때 기념일 추가 지정의 실질적 선양 효과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군인가족을 위한 기념일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 기념일을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국경일⁴⁾에 대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재 기념일과 관련된 기본법은 부재하므로 개별법을 통한 기념일 지정이 가능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근거로 55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고, 이외에 산재된 개별법에서 135개 기념일을 각각 정하고 있음.⁵⁾

둘째, 현행법 규정 및 타 기념일 관련 법률과의 체계성 등을 감안

2)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1984년 이후 매년 5월 어머니의 날(둘째 주 일요일) 전 금요일을 ‘군인 배우자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의 공식 연설, 올해의 군인 배우자상 수여, 선물 제공 및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3) 현행 기념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기념일 현황】 참조.

4) 해당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모두 5개임.

5) 현재 개별법에서 정한 기념일을 포함한 전체 기념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및 국회 입법절차를 통한 민의 수렴 등을 위해서는 기념일 전반에 대한 일반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하여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① 기념일 명칭을 ‘군인V가족의 날’에서 ‘군인가족의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이 ‘군인가족’을 정의⁶⁾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인V가족의 의미가 법률상 기 정의된 용어인 ‘군인가족’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② 개정안은 기념일 날짜를 ‘국군의 날 전(前)주 금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어떤 기념일의 날짜를 다른 특정한 기념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9월 넷째 금요일’과 같이 날짜를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 위원 한기호)

매년 9월 넷째주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

6)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